2025년도 (무재해) 관리감독자 교육_공통

1차시)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교육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폭발성: 이들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다량의 열과 가스를 발생시키며, 강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발화성: 이 물질은 통상의 상태에서도 발화하기 쉽고, 물과 접촉하여 가연물가스를 발생시키며 발열·발화를 일으킵니다.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화성: 이 물질은 불꽃을 일으키기 쉬운 가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서 증발한 가연성의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점화원에 작용하면 폭발을 일으킵니다.
산화성: 이 물질은 단독으로는 발화·폭발의 위험은 없지만, 가연성 물질이나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면 충격이나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킵니다.
가연성: 이 물질은 공기나 산소 중에서 어떤 일정 범위의 농도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킵니다.

※ 채광, 조명,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할 때,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조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으로 설정합니다.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단,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기둥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부 난간대가 12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취해진 장소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등을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할 때,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보호용 접지는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외함의 전위 상승을 방지하고, 감전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람과 전기설비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락사고나 뇌격전류가 발생하면, 이 전류들은 접지극을 통해 대지로 흘러갑니다.

※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 부적절하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장치의 제공, 근로자의 안전교육, 작업장의 안전 검사, 위험 요소의 식별 및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는 안전장비의 제공, 근로자의 안전교육, 작업장의 안전 검사, 위험 요소의 식별 및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외에도 방사선, 유해 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 화학물질은 산업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과 적절한 보호장비 제공,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 유해 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다양한 유형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제품 등을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할 때,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시력 보호와 작업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환기, 채광, 조명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전기 기계와 기구가 단상 220V 또는 삼상 380V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150V 미만의 전압에 비해 높아 전기재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계통도 자체가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차시) 위험성평가 교육

※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 활동
- 성과 중심의 위험관리
- 시스템을 통한 총체적 관리
- 유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 자율적인 안전보건 조치

※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호.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호.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의 종류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 등으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체크리스트법: 평가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각 항목은 'O' 또는 'X'로 체크하여 사업장에서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시 법률, 고시 및 지침을 참조하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도해야 합니다.
- 핵심 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방법입니다.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단계적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원 배치를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위험성평가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의 시행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종합한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구분하는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 그 외 규칙에 명시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은 공단 교육원에서 시행하며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무에 관해 총 20시간의 교육을 시행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수료 시 해당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위험성은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시행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시행을 총괄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 "허용 가능한 범위는 결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정해 둔 위험성보다 낮거나 개선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일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와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시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순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 발생이나 기존 요인의 위험성 변동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평가가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들은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평가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 "위험성을 판단한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 두 번째 방식인 '최초평가' 이후에 '상시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공정이나 기계, 물질의 변화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의 변동 빈도가 높은 경우에 적합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진행 방식은 '최초평가' 후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3차시) 관리감독자 교육-1

※ 산업재해에 관한 발생 보고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표준안전 작업 방법 감독 요령
-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비, 도구, 작업 공간 등이 안전 지침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정 간격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이 안전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전 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 노동자들에게는 입사 시,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일정 주기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노동자들이 안전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안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지침 이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5호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 중 사업장의 특정 인원에 대한 지도와 조언에 협조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며, 그들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아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개인용 보호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비개선 등의 필요 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토록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각 부서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조직 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부서의 직원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해당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이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특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사업의 특성,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에 속한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검은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평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 업장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품과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물품은 적절하게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별도로 보관하거나, 그 사용이 더 이상 예상되지 않을 경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그리고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계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이나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그리고 전기나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 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4차시) 관리감독자 교육-2

※ 위험성평가의 절차(제8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첫 번째 사전 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준비 과정을 진행합니다.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파악합니다.
3.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합니다.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이 높은 요인에 대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5.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유합니다.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소 3년간 보존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인정 제도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심사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하고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의 신청 대상(제16조1항)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건설공사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주의 사업장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시에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은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험성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만약, 작업이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을 주는 사업주와 도급을 받는 사업주 모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서 출발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기계나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요인, 그 위험성의 결정 결과, 위험성 감소 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그리고 근로자가 위험성 감소 대책에 따라 준수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적 제안 제도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프라인 게시판, 포스트잇, 제안함 등을 이용하거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와의 SNS 톡 채널 등을 통해 사진 제보, 사내 전자게시판 등 온라인상의 방법으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매주 진행하는 공유 및 점검회의는 도급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개최해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결과 중 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과 조치계획을 공유합니다.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의 변동이 크고, 수시로 세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이 모든 안전·보건 담당자와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그들의 의지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려면, 먼저 그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9조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성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놓치게 되면, 그 위험성을 파악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 위험성 감소 대책을 마련할 때는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큰 사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